

제 1138 호
1985. 7. 18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
편집인 : 공보관
전화 : 731-6111-3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35-3337

시보

차례

◎ 고 시

제 473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	3
제 474 호 : 주택개발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고시	3
제 475 호 : 주택개발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고시	4

◎ 사 령

공											
람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◎서울특별시 고시제 473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437 호('85. 7.2)로 결정 및 변경 결정된 도

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년 7월 18일

서울특별시 장

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조서

구분	등급	류별	폭원 m	연장 m	기 점	종 점	비 고
신설	소로	3	4	30	남가좌동 237-273	남가좌동 237-249	
기정	"	2	8	810	대로 3류 17호	홍은동 188 - 1	일부 구간 (L=135m)
변경	"	2	8	810	"	"	위치 변경
신설	"	3	6	44	북가좌동 421-23	북가좌동 421-26	

◎서울특별시 고시제 474 호

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775 호('84.12. 21)로 사업계획(변경)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제 213 호('76.9.4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된 바 있는 주택개량재개발. 현저 3구역에 대하여

2. 도시재개발법 제 5조, 동법 제 64조 및 동법시행령 제 56조 동시행령 제 5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3. 관계도서는 종로구청(주택과 및 도시정비과) 과 본청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

보인다.

1985. 7. 18.
서울특별시

가. 사업의 명칭 : 주택개량재개발사업
 나. 구역명 : 현저 3구역
 다. 면적 : 141,474 평방미터
 라. 사업계획변경결정도서 : 별첨(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75 호

주택개량재개발사업 계획변경결정고시

1. 건설부고시 제 343호 ('78.11.11)

로 사업계획 결정된 청량리 제 2 구역에 대하여

2. 도시재개발법 제 5 조 같은법 제 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6 조, 제 58 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7. 18.
서울특별시

가. 내역

구역명	위 치	사업면적	비고
청량리 제 2 구역	동대문구청량리동 234 번지일대	13,821 ㎡	

나. 사업계획 변경결정도서 : 별첨 (생략)
 다. 단독개발 방식을 합동개발 (공동주택) 방식으로 변경

사 령

◎ 1985년 7월 9일 령제 256 호

서울특별시 비서관
 비서관 김 병 용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.
 대 동 령

지방서기관에 임함.
 영등포구 부청장직무대리를 명함.
 서울특별시

◎ 1985년 7월 18일 령제 257 호

내 무 국
 지방행정사무관 정 호 성

부직을 명함.

◎ 1985년 7월 20일		령제 258 호	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윤영의	전자제산소	내무국 인사과	지방별정직 8급상당
이인순	내무국 인사과	전자제산소	

서울특별시장

◎ 1985년 7월 13일

령제 259 호

서울특별시

농림기과

최 광 빈 (崔 光 彬)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진출을 명함.

내 통 령

기술심사담당관 조경심사제장에 포함.

서울특별시장